

 <b>보건복지부</b>	<h1>보 도 참 고 자 료</h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small>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small>				
<b>배 포 일</b>	2021. 4. 1. / (총 8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오 창 현	전 화	044-202-2470
	담 당 자	신 요 한		044-202-247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센 터 장	구 흥 모		02-2076-0604
	팀 장	백 현 지		02-2076-0633

## 환자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

-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 등의 환자안전 활동 지원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환자안전센터 관련 고시 주요 내용>

-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환자안전법 제8조의3>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식, 평가일정, 지정기간(3년), 평가절차,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고시로 정함.
  - (신청 자격 :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3조의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 그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인력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

□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을 위해 지정기준, 절차 등이 담긴 지정 계획을 공고(지정예정일 2개월 전까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협회·단체를 선정평가위원회(대학교수를 포함한 환자안전전문가 9인 이내)의 심의를 거쳐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한다.
-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3년 동안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신청자격은 500병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인력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이다.

□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은 '19년과 '20년 각각 4개 기관(대학병원 2개소, 관련단체 2개소)을 대상으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을 운영하였다.

- 예비사업에서는 보건의료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환자안전 캠페인 실시, 중소 의료기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주의경보 및 정보제공지 배포·안내 등을 수행하였으며,
- 예비사업 결과를 기초로 본사업에서 지정기관의 역할·사업 범위 등 효율적 운영방안, 사업비 관리지침, 환자안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21년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절차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지정계획은 보건복지부(누리집\*) 및 중앙환자안전센터(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포털\*\*)에 공고할 예정이며, 지정신청 접수 기간은 4~5월 간이다.

-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포털(<https://www.kops.or.kr>)

○ 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5~6월)를 거쳐 적정한 기관 및 협회·단체를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7월 1일)하고, 지정기관 및 단체는 매년 환자안전사업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환자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 '21년도 확보 예산 5개소, 총 4억 원

○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매 연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3년 차가 되는 '23년 12월 재지정 절차를 통해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재지정을 받으면 계속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유기적 업무 연계로 지역 중소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교육 사업, 예방 및 홍보 활동, 환자 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1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예방팀 (02-2076-0678,0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 붙임 > 1.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

**붙임 1**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5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또는 협회 및 단체 중에서 지역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이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공모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이하 “지정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간)** 지역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재지정)** ① 재지정을 받을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센터의 지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업결과보고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지정을 원하지 않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와 이의신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의 취소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재지정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받은 경우

제7조(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센터 선정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하며 선정평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인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인
3.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인

⑤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선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7. 30.>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환자안전법」 제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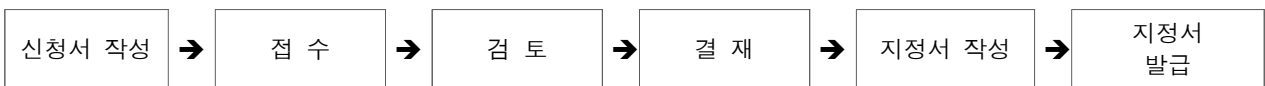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1부 4. 재정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 80g/㎡]